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99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안 제4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0.

다.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조).

Ⅲ. 검토의견

1.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안 제4조)

가. 개정안 요지

- 특수도서관 중 교정시설도서관을 교도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여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함(안 제4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략)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5.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u>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다. <u>교도소·치료감호소</u> --- ----- -----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	-----
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
관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4조제2항¹⁾은 도서관을 설립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고, 특수도서관 중 교정시설도서관은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1)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 개정안은 교정시설도서관의 정의에서 폐지된 ‘보호감호소’ 표현
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보호감호소는 종전의 「사회보호법」 2)에 따라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감호·교화하는 시설로, 보호감호 처분이 피
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여 위험적인 소지가 있
다는 점에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³⁾되면서 보호감호소
역시 폐지되었으므로,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표
현을 삭제하여 법률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4조제2항제5호다목의 ‘치료감호소’ 표현도 2022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법무병원’
으로 변경⁴⁾되었으므로, 현행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표현을 삭제

2) 舊 「사회보호법(2005년 폐지)」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의 죄를 범한 때
2. 범죄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의 죄를 범한 때

3) 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폐지이유

현행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험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립법무병원
2.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
원”이라 한다)

법률 제18678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 이유

치료감호의 목적은 치료·재화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담당하
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호감호소’는 위헌 소지로 인해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사라진 시설이므로 「도서관법」에서 해당 표현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치료감호소’가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9